

2022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계획

1. 시험 개요

- 응시 대상 : 한국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인도 가능)
- 시행 횟수 : 총 6회(심화 6회, 기본 4회) ※ 제59회, 제62회는 심화만 시행

회차	제57회	제58회	제59회	제60회	제61회	제62회
시험일	2월 12일(토)	4월 10일(일)	6월 11일(토)	8월 6일(토)	10월 22일(토)	12월 3일(토)

※ 제58회 시험은 토요일근무자 등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에 실시

○ 인증 등급 기준

종류	인증등급	급수 인증 기준	평가 수준	문항수
심화	1급	80점 이상	대학교 교양 및 전공 학습, 고등학교 심화 수준	50문항 (5지 택1)
	2급	70점 이상 80점 미만		
	3급	60점 이상 70점 미만		
기본	4급	80점 이상	중·고등학교 학습, 초등학교 심화 수준	50문항 (4지 택1)
	5급	70점 이상 80점 미만		
	6급	60점 이상 70점 미만		

○ 평가 내용

종류	평가 내용
심화	한국사 심화과정으로서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주요 사건과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역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 상황 및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
기본	한국사 기본과정으로서 기초적인 역사 상식을 바탕으로 한국사의 필수 지식과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

○ 시험 시간

종류	시 간	내 용	소요시간
심화	10:00 ~ 10:10	오리엔테이션(시험 시 주의 사항)	10분
	10:10 ~ 10:15	신분증 및 수험표 확인(감독관)	5분
	10:15 ~ 10:20	문제지 배부	5분
	10:20 ~ 11:40	시험 실시 (50문항)	80분
기본	10:00 ~ 10:10	오리엔테이션(시험 시 주의 사항)	10분
	10:10 ~ 10:15	신분증 및 수험표 확인(감독관)	5분
	10:15 ~ 10:20	문제지 배부	5분
	10:20 ~ 11:30	시험 실시 (50문항)	70분

○ 문항 이의신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 신청 내용 심사
- 시험 종료 후 다음 주 금요일 16:00 홈페이지에 심사결과 발표

○ 시험 결과 발표

- 시험 종료 후 2주 이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응시자가 시험 홈페이지 회원으로 접속한 후 합격 여부 확인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붙임1) 출력 가능

○ 성적 이의 신청

- 답안지 확인 등 성적 이의 신청은 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 답안지 및 성적 확인 청구자는 본인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 시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하여야 함.
 - ※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원서접수

- 방법 : PC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를 통해 접수
 - ※ 휴대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접수 취소 불가
- 구분 : 정기접수, 추가접수
- 정기접수
 - 정기접수는 시도별 해당 접수일에만 접수 가능

구분	정기접수 가능 시도							비고
1일차 10:00 ~ 2일차 09:00	인천	경기						
2일차 10:00 ~ 3일차 09:00	대전	세종	광주	충남	충북	전남	전북	
3일차 10:00 ~ 4일차 09:00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4일차 10:00 ~ 5일차 09:00	서울	강원	제주					
5일차 10:00 ~ 8일차 18:00	전국							

- ※ 정기접수 기간에는 시험장 취소는 가능하나 시험장 변경은 불가
- ※ 천재지변과 감염병 유행 시 일부 권역의 시험장이 폐쇄될 수 있으며, 시험장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시험장은 응시생이 직접 선택하나, 임시시험장 선택 응시자는 임의 배정
 - ※ 정기접수 인원과 시험장 확보를 고려하여 임시시험장을 개설·운영하거나 부득이하게 접수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임시시험장의 경우 선택한 권역이 아닌 인근 권역의 시험장으로 배치할 수 있음

○ 추가접수

- 정기접수 후 남은 배정 좌석에 대해 추가접수 시행
- 전 지역 접수, 취소 및 수정과 원서 사진 등록 동시 가능
- 접수 취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

3. 응시 수수료 및 환불

○ 응시 수수료

구분	심화	기본
응시료	22,000원	18,000원

※ 응시 수수료를 가상계좌로 입금 시, 은행별로 마감 정리시간에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입금(환불)

마감일에는 22시까지 반드시 입금(환불)하여야 함

○ **접수취소에 따른 환불**

- 전액(100%) 환불 : 추가접수 종료 전까지
- 반액(50%) 환불 : 추가접수 종료 후부터 시험장 변경 마감 전까지
- ※ 해당 기간 이후에는 접수 취소 및 그로 인한 환불이 원칙적으로 불가

○ **시험일 이후 환불 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 전액 3. 응시자가 사망하거나 시험 당일 수술·입원한 경우 응시 수수료 전액 4. 응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와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응시 수수료 전액(증빙 자료를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환불) 5.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시험 실시가 불가능해 시험 취소 되는 경우 응시 수수료 전액 6.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응시 수수료 전액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50% 환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붙임 2 참조)를 응시원서 접수 시에 제출(시스템에 응시 수수료 50% 환불 종료기간까지 업로드), 시험 종료 후 납부액의 50% 환불조치

4. 응시자 안내 사항

○ **필수 지참물**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수험표**
-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과 **수정테이프**(수정액)
- 본인 사진이 부착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응시자별 규정 신분증>

구분	신분증
초등학생	수험표
중·고등학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 사진 부착된 (국외) 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사진 및 생년월일이 기입된 생활기록부, 사진 및 생년월일이 기입된 재학 증명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확인증명서(붙임 3 참조)
일반인(대학생, 군인 포함)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확인증명서(군인만 해당, 붙임 3 참조)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 거소 신고증
재외국민	재외국민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 불가함. 단, 초등학생은 수험표만 지참하여도 응시 가능

※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기기 사용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용 금지 물품**(무선 통신기기)
 - 휴대전화기, MP3, 무전기, 호출기, 전자사전, 무선기능 전자시계(시계형 스마트기기 포함), 디지털카메라, 무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
- **유의 사항**
 - 응시자는 시험 당일 **10:00까지 해당 시험장에 입장**해야 하며, **10: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착석**
 - 응시자는 **답안 작성 유의사항(붙임 4)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함**
 - 응시자는 답안지를 책상 위에 얹어놓고 조용히 퇴실*하되,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
 - * 퇴실은 시험 종료 전 15분이 원칙이나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수험표 사진 규정**
 - **6개월 이내 촬영한(약 3×4cm, 가로 120px, 세로 160px, 파일형태는 jpg 또는 gif)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배경**이어야 하며, **얼굴 크기가 사진의 1/3 이상**이어야 함(3Mbyte 이하 권장)
 - **본인 얼굴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사진(풍경, 동물, 사물, 그림 사진 등)일 경우 시험 응시 불가**

5. 부정행위자 처리

- 부정행위자는 즉시 퇴장 조치되며, '부정행위자 조서'를 작성하도록 함
- 답안지는 사인펜으로 ×표와 함께 '부정행위'라고 기재하고 무효 처리함
- 부정행위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처분함

<해당시험 정지 또는 무효>

-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의 전자 알람음 혹은 진동을 발생시킨 경우
- ▶ 답안지를 갖고 나가는 행위
- ▶ 지정된 좌석에서 응시하지 아니한 행위
-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해당시험 정지 또는 무효 및 해당시험 실시 후 연속 3회 응시자격 정지>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 쪽지 등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 ▶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 ▶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등 폭력으로 다른 응시생을 위협하는 행위
- ▶ 신분증을 위조·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 부정행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험생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일 이내** 담당자 이메일(khe1@korea.kr)로 이의 신청 내용을 전송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검토

후 처분을 최종 확정, 수험생에게 통보

6.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 장애인 등의 범위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 임산부 등 편의 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

※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따름

○ 장애인 등의 증명

- 장애인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팀에 제출하여야 함

필수사항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선택사항	의사 진단서(소견서) ※ 시험일 기준 2년 이내

- 증빙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제출
- 장애 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증빙 서류 미제출 시에는 '편의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편의지원 신청 절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붙임 5)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사항 확인(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확인)
- 원서접수 시, 필요한 편의지원 내용을 체크한 후에 증빙 서류 파일 업로드 또는 사전 연락(1577-8322, 유료) 후에 팩스(02-500-8230) 발송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 1900년 1월 1일
합격등급 : 1급
인증번호 : 00-123456

위 사람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제 0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위 급수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100 년 1 월 26 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음. 필요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www.historyexam.go.kr)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출력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5.4.20.>

제 호

수급자 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3. 주소(소재지):

4. 수급자 구분: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5.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 유의사항: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발급합니다.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확인증명서

사진 (3×4) 반드시 사진 위에 학교장 또는 부대장의 직인 또는 철인을 받아야 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학교/부대		
용 도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용		
연 락 처			
발급업무 담당자	성명		중·고등학생 : 해당 연도
	연락처		군인 : 해당 회차
유효기간			

상기자는 본 학교/부대 소속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1. . .

기관장 _____ (직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시험 당일 규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대학원생이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허위 작성 시 민·형사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답안 작성 유의사항**

-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하므로,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답안을 예비 표기하였을 경우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혀서는 안 됨
- 답안지에는 예비 표기를 포함해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 시험 중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 인적사항 등 답안지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함
 - ※ 교체 전 답안지는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답안지 교체에 따른 추가시간은 없음
- 한번 표기한 답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완전히 지운 후 수정하여야 함
 - ※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바르지 못한 수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하거나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는 해당문항을 “오답” 처리함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바른 방법	바르지 못한 방법
●	① ○ ● ∇ ⊗

중복 답안으로 인한 오답 처리 예시	
예비 마킹이 남아있는 답안	① ② ✓ ④ ●
수정테이프 사용 없이 X표시한 답안	① ⊗ ● ④ ⑤
2개 이상의 문항에 점이 찍힌 답안	● ② ③ ④ ⑤

□ **응시자 정보 작성 요령**

- 성명란에는 응시자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정자로 기입
- 수험번호란에는 수험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먼저 기입하고, 수험번호의 숫자 해당란에 “●” 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붙임 5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지원 내용

유형	편의지원 내용	본인 휴대 용품	비고	
시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 연장 1.5배 문제 음성 파일 혹은 확대문제지 150% 혹은 축소문 제지(71%, A4 크기) (음성파일, 확대문제지, 축소문제지 중 하나만 선택가능) 음성파일 선택 시 문제 설명 자료 파일 답안지 대필 특별시험실 배정 “중증”으로 표기된 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의사 소견서 추가 제출 	노트북 (음성낭독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노트북) 확대경, 확대독서기 (필요시 지참 가능)	기존 1급
	장애정도가 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 연장 1.2배 확대문제지 150% 혹은 축소문제지(71%, A4 크기) 답안지 대필 특별시험실 배정 	확대경, 확대독서기 (필요시 지참 가능)	기존 2~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 연장 1.2배 확대문제지 150% 혹은 축소문제지(71%, A4 크기) 특별시험실 배정 답안지 대필(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음성파일 선택 시 문제 설명 자료 파일(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확대경, 확대독서기 (필요시 지참 가능)	기존 4~6급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 연장 1.2배 확대문제지 150% 답안지 대필 특별시험실 배정 	필기보조도구 (필요시 지참 가능)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 연장 1.2배 확대문제지 150% 특별시험실 배정 답안지 대필(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기존 4~6급
지체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 연장 1.2배 답안지 대필 특별시험실 배정 확대 문제지 150%(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필기보조도구 (필요시 지참 가능)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 연장 1.2배 특별시험실 배정 확대문제지 150% 및 답안지 대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기존 4~6급
	하지/척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시험실 배정 		
청각 장애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시험실 배정 		기존 1~6급
기타	뇌전증·지적·자폐성 정신·언어·발달 장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시험실 배정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 여부 결정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시험실 배정 		